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84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 강기윤・구자근・이명수

권명호 · 최형두 · 안병길

서병수 · 송언석 · 윤영석

박성중 • 곽상도 • 김희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(이하 "주간활동 서비스 등"이라 함)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간활동 지원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.

한편,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함(안 제29조 및 제37조).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(안 제38조의 2 신설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 제목 중 "주간활동·돌봄"을 "주간활동·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·돌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"를 "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제30조부터"를 "제29조부터"로 한다.

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서비스의 관리·평가) ①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 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·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로 부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거주시설ㆍ <u>주간활동ㆍ돌</u>	제29조(거주시설ㆍ <u>주간활동ㆍ청</u>
<u>봄</u> 지원) ① (생 략)	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
	<u>동·돌봄</u> 지원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	②
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	
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	<u>z]</u>
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	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서비스
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<u>를 제공할 수 있다</u> .
<u><신 설>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
	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
	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
	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
	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
	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
	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
	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
	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
	<u>로 정한다.</u>
제37조(서비스의 제공 등) ① 국	제37조(서비스의 제공 등) ①

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제30조부</u> 턴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「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사 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 <신 설>

	- <u>제29조부</u>
<u>터</u>	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제38조의2(서비스의 관리·평가)
 ①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
 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
 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
 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
 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
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
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·평가하여 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